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해설

최 두 선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Ⅰ. 머리말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공공사업의 발주가 일제히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공사를 가능한 상반기 중에 앞당겨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재정법 및 기타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발주공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도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1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 · Q) 대상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대상공사는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 의뢰하는 공사 중에서 500억원 이상 P · Q대상 공사는 금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모든 공사를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창작성 등이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에 대하여는 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할 수 있다.

Ⅲ.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격외에 비가격 요소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낙찰자 결정형태 〉

조달발주 공사	100억원이상 P · Q대 상공사(22개 공정)	
	대안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
자체발주 공사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술성, 창작성, 상징성, 기념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낙찰자 결정제도를 말하며 지난 '9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업체의 능력을 심사하게 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동제도의 특징은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산정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순공사비 수준까지는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를 증가시키되 그 이하로 가격이 낮아지면 점수가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통과점수는 아래와 같다.

Ⅳ.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1. 개정배경

행정자치부는 지난 2.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예규 제135호)하였다.

그동안 적격심사낙찰제도가 변별력이 부족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97 건설업등록요건 완화로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가 난립하여 성실업체 수주기회가 감소되고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대금지급 관행이 이루어져 업체의 자금난 악화 및 부실시공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실한 업체의 수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동 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2. 개선방향

개선의 방향은 공사규모에 따라 크게 5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품질확보와 건설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우위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선

구 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이상 공사	3억미만공사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공경험	15	13	12	15	15	15	10	-	-
경영상태	10	11	13	15	15	15	10	10	9.8
접근성									0.2
신 인 도	. 2	. 2	. 2	. 2	-1	-1	-1	-1	-1
기술능력	15	16	15	-	-	-	-	-	
하도급계획 적 정 성	12	12	12	10	-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14	14	14	10	-	-	-	-	
시공여유율	4	4	4	-	-	-	-	-	
입찰가격	30	30	30	50	70	70	80	90	9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률)	85점 (72.995%)	아래참조	아래참조	95점 (85.495%)	95점 (86.745)	95점 (86.745)	95점 (87.745)	95점 (87.745)	95점 (87.745)

〈 2002 자체발주공사 : 총 69,064건 14조 2,627억원 〉

▶ 1000억원 이상 : 22건 1조 7,605억원(12%)
▶ 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 11건 5,951억원(4%)
▶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 25건 6,621억원(5%)
▶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 89건 1조 2,908억원(9%)
▶ 100억원 미만 : 68,917건 10조 9,542억원(70%)

하였다.

둘째, 중간규모(100억원미만~10억원이상) 공사는 경쟁력있고 성실한 중견업체의 수주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부실업체의 입찰참가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부정 및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였다.

셋째, 1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 모든 업체에 수주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되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에 대한 난립방지대책을 강구하였다.

넷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공사대금 지급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3. 주요개선내용

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기술경쟁력 위주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중 100억원이상 P·Q(Prequlification) 대형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대상공사는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500억원이상 공사는 2004. 1. 1부터 최저가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P·Q 공사(22개공종) 및 대안입찰, 일괄입찰(일명 턴키방식)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만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배점기준〉

(단위 : 점)

구분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하도급계 획	자재 및 인력조달	시 공 여유율	신인도	입찰가격	최저 낙찰율(%)	통과점수
1000억이상	100	13	13	14	12	14	4		30	72.9	85점
1000억미만 100억이상	100	12	13	15	12	14	4		30	77.9 82.9	90점 (300억이상) 95점 (100억이상)

현 행(100점)	개 선(100점)	비 고
●수행능력(40점) - 시공경험 : 13점 - 기술능력 : 14점 - 경영상태 : 13점	●수행능력(40점) - 시공경험 : 15점 - 기술능력 : 15점 - 경영상태 : 10점	+2점 +1점 Δ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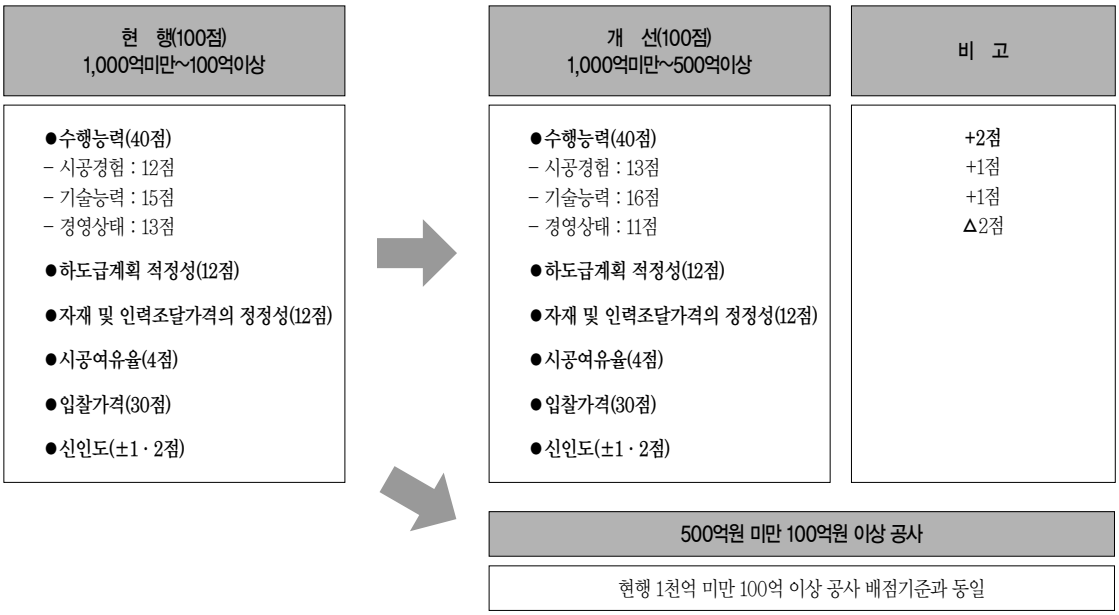

자치단체에서 P · Q를 실시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동안 시공경험이나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고 일부 평가항목은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 기준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추진 및 유도가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력우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였다.

둘째,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천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를 500억원을 기준으로 분리하고 배점기준을 차등화 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셋째,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종전 평가항목중 설비 및 장비보유상황,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의 평가항목은 사실상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모두 삭제하고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2점), 시공평가결과(3점)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이중에서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 평가항목은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기준 시행일 1년 이후부터 시행하되 최근 1년간 개발 ·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00억원이상 공사는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경험 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만점으로 평가하며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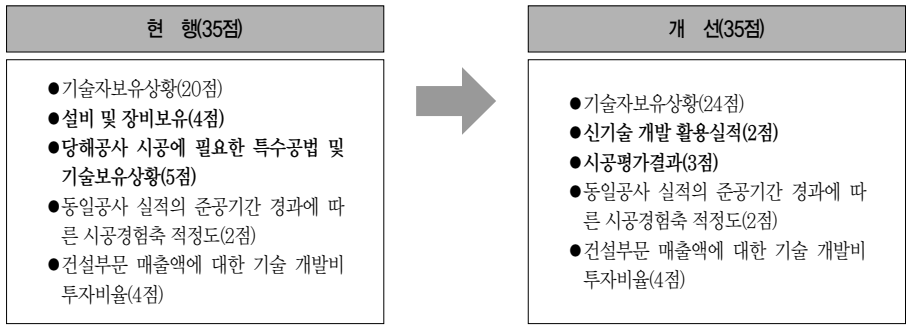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신기술개발 활용실적(2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고시되어 활용한 실적
※ 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는 신기술은 1점 배점

●시공평가결과(3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평가
①품질관리 ②공정관리 ③하도급관리 ④기술개발
⑤안전관리 ⑥환경관리 ⑦현장관리 ⑧부실벌점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시행시기를 정하기 전까지는 만점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나.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그동안 시설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었으나 평가항목, 평가시점,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연도 연말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기준일 대비 최소 6개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점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한된 경영상태 지표에 따라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업체에 비하여 경영상태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또한 업체평균치에 의한 상대평가로 수시결산제도를 악용하거나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개정을 통하여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발주시에는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하는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고, 단계적으로 신용평가대상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신용평가를 받는 업체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경영상태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중 업체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식을 30억이상 공사와 30억원미만 공사를 구분하여 달리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30억원이상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 분자별로 수치를 합산

〈현행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①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②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③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④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⑤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⑥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⑦총자산순이익율 (다이순이익/총자산)	
⑧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⑨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 2]	⑩신용평가등급	
⑪감사인의견	⑫영업기간		

●추정가격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공사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 의존도	④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영업이익율	⑥매출액 순이익율	⑦총자산 순이익율	
⑧영업현금흐름비율	⑨자산회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매출액순이익율
④매출액영업이익율	⑤자산회전율	

●50억원 미만 공사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평 가 방 법 : 상대평가방식

평가항목별로 업체 전체 평균비율(값) 대비 해당 업체비율을 5등급화(A~E등급)

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업체간 경영상태에 차이가 있어도 자본력 등이 큰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우량업체 선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토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다.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현행 시설공사의 시공실적의 평가는 ①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와 ②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현행 평가방법은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의 실적평가방법이 동일하여 공사금액에 따른 변별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운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또한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동일실적만 인정토록 하고 있어 유사실적은 "0"점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사례 : 4차선 도로공사 발주시 2차선 도로실적 불인정)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00억원이상 공사의 만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실적제한 공사의 실적평가시 동일실적과 업종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의 경우 여러 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라. 하도급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현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거래를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 기능을 왜곡시킬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별 배점 및 평점(안)〉

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
회 사 채	기업어음		
AAA		33.0	33.0
AA+, AA0, AA0-	A-	32.0	32.0
A+	A2+	31.6	31.6
A0	A20	31.3	31.3
A-	A2-	31.0	31.0
BBB+	A30	30.5	30.5
BBB0	A30	30.3	30.3
BBB-	A3-	30.0	30.0
BB+, BB0	B+	28.7	28.7
BB-	B0	28.0	28.0
B+, B0, B-	B-	26.0	26.0
CCC+ 이하	C 이하	24.0	24.0

〈예 시〉

A업체 60%, B업체가 40%로 참여한 경우 부채비율 점수 산정

(A부채총계 60%+B부채총계 40%)/(A자본총계 60%+B자본총계 40%) 전국평균부채 비율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논란이 있으나 건설업 전체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68.8%)이 크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하도급거래내용 일부를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고질적

구분	인정범위	인정기간	평가방법	만점기준
실적제한입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물량으로만 인정 ▶인정규모(크기)는 실적제한 규모와 같거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	실적/평가기준×100 ※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에서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천억원 이상 120% 천억원 미만 100%
실적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 업종 ▶금액으로 인정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개년 실적누계 (기성실적인정)	▶50억 이상 3년간 실적/추정가격×2 ▶50억 미만 3년간 실적/추정가격×100	▶20억이상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200% ▶20억원 미만 - 10~20억 : 180% - 10억 미만 : 50%

〈100억원이상 공사의 만점기준 비율을 상향조정〉

현 행	개 선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1천억원 이상 공사 : 120%	– 1천억원 이상 공사 : 130%
– 1천억~5백억원 이상 : 100%	– 1천억~5백억원 이상 : 120%
– 5백억원~100억원 이상 : 100%	– 5백억원~100억원 이상 : 110%
– 100억원 미만 공사 : 100%	– 100억원 미만 공사 : 100%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1천억원 이상 공사 : 200%	– 1천억원 이상 공사 : 250%
– 1천억~5백억원 이상 : 200%	– 1천억~3백억원 이상 : 230%
– 3백억원~100억원 이상 : 200%	– 3백억원~100억원 이상 : 22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10억원 미만 : 50%	– 10억원 미만 : 70%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실적제한공사 평가시 동일실적과 업종별실적을 혼합평가〉

현 행	개 선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5%)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5%)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0%)
●10억미만 공사	●10억미만 공사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복합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 평가 방법〉

①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공고에 명시해야함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 동일 법령내 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 모두 평가해야 함
② 평가대상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공사 평가기준금액대비 평가대상업종별 실적에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인 부실시공 및 부정부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원도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자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서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현금지급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처,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상호협의를 통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촉진을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항목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하도급직접지급실적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배점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직불을 촉진토록 하였다.

또한 50억원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평가사례가 거의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우수건설업자 신인도평가항목에 대하여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로비 등 폐해가 심각하여 동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였다.

마.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강화

지난 '99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낙찰제도가 모든 공사에 전면 시

〈일반적인 하도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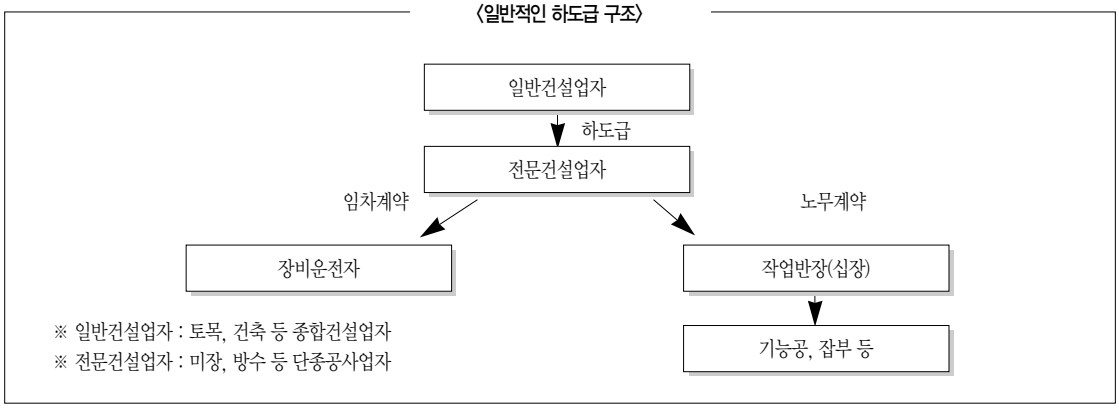

종 전	개 선
●하도급비율(5~4점)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업체 하도급비율(2~1점)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업자 수급 비율(5점))	●하도급비율(4~3점)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업체 하도급비율(2~1점)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업자 수급 비율(5점)) ●최근 1년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1점) – 총 발주공사 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가 10% 이상 : 1점 – 총 발주공사 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가 10% 미만인 경우 : 0.5점

종 전	개 선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1점) ●서면경과 2회 이상 처분(2점)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3점) ●고의 과실로 공무원을 징계처분 받도록 원인제공자(3점)	●최근 1년 이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1회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자(1점) - 2회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자(2점) - 3회이상 처분사실이 있는자(3점)

행된 이래 적격심사과정에서 허위 실적제출 등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생되어 왔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발주자의 재량행위를 악용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금번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체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외에 입찰참여시 일정기간(2년) 동안 감점(△1점) 처리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다.

동 개선내용은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바. 2억미만 소규모 공사의 평가방법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2억원미만 소규모공사가 전체 경쟁입찰 공사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공사 발주시에는 사실상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1건 발주시 4~5백개 업체가

종 전(10억원 이상)	개 선(50억원 이상)
●최근 1년이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 (+3.0~+0.5점)	●우수건설업자의 신인도 평가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 1년간 "건설업자간상호협력관계"를 평가 실적이 우수한 자에 가산점 부여 (+3.0~+0.5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평가항목
①공동도급실적(10) ②하도급실적(35) ③협력관계의 안정성(10) ④협력업자육성(35)
평가기간 : 1년간의 활동실적을 매년 1회 평가
평 가 자 : 건설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 위탁평가)

〈제재대상〉

①부실시공자 ②담합행위자 ③입찰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④입 낙찰 또는 계약체결 이행과 관련 뇌물제공자
※ 위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자

응찰하는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적격한 업체라도 원거리 외지업체가 낙찰되는 경우에는 인력 · 장비이동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당해 시 · 도지역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의 경쟁입찰시에는 당해 시 · 군소재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개선하였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발주공사 관련 업종소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동 항목을 평가하지 않도록 동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사. 기타제도 개선사항

현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보유상황에 대한 평가방식을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여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전출입하는 공백기간동안 기술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신인도평가시 벌금형이상 감점적용시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기간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행능력 평가시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상 일정금액 미만을 절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평가시에 입찰참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사금액이 낙찰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사된 금액까지 인정토록 하였다.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지역업체가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능력에 맞는 시공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을 3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하였다.

Ⅴ. 맺은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지난 2. 6일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기준이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거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될수록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낙찰제도는 근본흐름은 같더라도 지방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구체적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100% 부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종 전(10억원 이상)	개 선
●경영상태 10점 ●가격 90점 ●특별신인도(+2점) – 당해공사금액 대비 실적 1배 소지자	●경영상태 9.8점 ●가격점수 90점 ●접근성 : 0.2점 – 시군지역 시군지역업체 : 0.2점 ●특별신인도(+2점) – 당해공사금액 대비 1배 소지자